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577

발의연월일: 2024. 11. 14.

발 의 자: 김성원・이인선・고동진

김선교 • 김위상 • 임이자

구자근 • 이종배 • 박충권

박성훈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가 빈발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나라에도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단시간에 내리는 폭우나 역대급 규모의 태풍 같은 재해는 인간의 힘으로 막기 어렵겠지만, 재해 발생 전 미리 주변에 존재하는 위험요 소를 인식할 수 있다면 피해규모를 줄일 수 있음.

일본의 경우 홍수, 산사태, 해일 등 방재정보를 제공하는 해저드맵 (Hazard Map)을 지역별로 만들어 주민에게 배포할 뿐 아니라, 부동산거래 시 대상물건 소재지의 해저드맵 제시와 관련 설명을 의무화해구매자에게 재해위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이에 국내도 중개대상물이 위치한 지역의 홍수 및 가뭄취약지도, 지 진위험지도 등 재해 관련 지도를 중개대상물의 설명 사항에 포함하도 록 하여 사전에 재해 위험의 유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제25조제1항).

법률 제 호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5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가뭄취약지도
-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①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			
성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확인하여 이를 해당 중개			
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			
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			
실 · 정확하게 설명하고, 토지대			
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			
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3.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u>는 사항</u>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5		
	항에 따른 홍수위험지도 및		
	<u>가뭄취약지도</u>		
<u><신 설></u>	4.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지진위험지도		
<u><신 설></u>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u>는 사항</u>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